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김 수 석*

Keywords

농업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 기업농(corporate farm), 가족농(family farm), 유한책임경영(limited responsibil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by conducting case stud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of agricultural corporation operators. It also seeks to come up with directions and practical ways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with regard to various aspects such as law, institution, and policy by drawing implications from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s and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Korean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achieve two distinct goals. One of them is to provide a basis for fostering large scale agricultural corporations as business enterprises. The other is to establish a new form of corporation with the scale of small family farms, thus rationalizing the family farm management currently prevailing.

차례

- | | |
|------------------------|--------------------|
| 1. 문제 제기 |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와 시사점 |
| 2. 농업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 5. 농업법인의 제도적 발전방향 |
| 3. 현행 농업법인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 6. 맺음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문제 제기

DDA와 FTA 등 시장개방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이다. 농업법인경영체(약칭 농업법인)는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으로 도입되었다. 즉 정부는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해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지난 지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해보면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2005년 5천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업법인의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이 연구는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업법인의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농업법인제도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발전방향과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업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법인의 총수는 2001년 5,167개에서 2002년 5,598개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 5,260개, 2006년 5,308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다<표 1>. 전체적으로 농업법인의 수는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법인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다.

농업법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는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자자개별운영은 형식적으로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별 농가가 각자의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출자자개별운영이 전체 농업법인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출자자개별운영의 경우는

법인설립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을 해산하는 데 제도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해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출자자개별운영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농업법인 사업체의 업종은 크게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1~2005년에 농업법인의 업종별 업체 수 비율은 농업생산업의 증가 후 감소, 가공 및 유통판매의 증가, 농업서비스업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요약할 수 있다<표 2>. 농업생산업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비율은 2001년의 44.9%에서 2003년 45.9, 2006년 41.6%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농업법인의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2001년의 1억 8천만 원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전체의 출자금 규모별 분포를 보면 5억 원 이상 업체 수의 비율이 2001년의 8.2%에서 2006년 11.6%로 계속 증가했다.

표 1. 농업법인의 운영 형태별 추이

단위: 개, %

구 분	기준연도	운영 중인 사업체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합 계	2001	5,167 (100.0)	2,589 (50.1)	557 (10.8)	2,021 (39.1)
	2002	5,598 (100.0)	2,826 (50.5)	593 (10.6)	2,179 (38.9)
	2003	5,432 (100.0)	2,837 (52.2)	605 (11.1)	1,990 (36.6)
	2004	5,492 (100.0)	2,828 (51.5)	702 (12.8)	1,962 (35.7)
	2005	5,260 (100.0)	2,841 (54.0)	708 (13.5)	1,711 (32.5)
	2006	5,308 (100.0)	2,892 (54.5)	765 (14.4)	1,651 (31.1)
영농조합법인	2001	3,919 (100.0)	1,908 (48.7)	440 (11.2)	1,571 (40.1)
	2002	4,315 (100.0)	2,177 (50.5)	476 (11.0)	1,662 (38.5)
	2003	4,274 (100.0)	2,269 (53.1)	477 (11.2)	1,528 (35.8)
	2004	4,425 (100.0)	2,337 (52.8)	560 (12.7)	1,528 (34.5)
	2005	4,293 (100.0)	2,396 (55.8)	562 (13.1)	1,335 (31.1)
	2006	4,410 (100.0)	2,467 (55.9)	599 (13.6)	1,344 (30.5)
농업회사법인	2001	1,248 (100.0)	681 (54.6)	117 (9.4)	450 (36.1)
	2002	1,283 (100.0)	649 (50.6)	117 (9.1)	517 (40.3)
	2003	1,158 (100.0)	568 (49.1)	128 (11.1)	462 (39.9)
	2004	1,067 (100.0)	491 (46.0)	142 (13.3)	434 (40.7)
	2005	967 (100.0)	445 (46.0)	146 (15.1)	376 (38.9)
	2006	898 (100.0)	425 (47.3)	166 (18.5)	307 (34.2)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표 2. 농업법인사업체의 업종별 추이

단위: 개, %

구 분	기준연도	합 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농업법인	2001	3,146	1,411(44.9)	337(10.7)	339(10.8)	633(20.1)	426(13.5)
	2002	3,419	1,508(44.1)	373(10.9)	435(12.7)	561(16.4)	542(15.9)
	2003	3,442	1,580(45.9)	433(12.6)	463(13.5)	450(13.1)	516(15.0)
	2004	3,530	1,609(45.6)	468(13.3)	507(14.4)	355(10.1)	591(16.7)
	2005	3,549	1,545(43.5)	498(14.0)	540(15.2)	326(9.2)	640(18.0)
	2006	3,657	1,520(41.6)	529(14.5)	624(17.1)	312(8.5)	672(18.4)

주: 출자자개별운영을 제외한 농업법인의 조사결과임.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006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하는 농업법인은 2,381개소로서 전체 법인의 44.9%였다. 2006년 결산법인의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8.2%였고, 법인당 자산이 14억 7,100만 원, 부채가 9억 6,000만 원, 자본이 5억 1,000만 원이었다.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4,800만 원이나, 결손법인을 제외하면 8,9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다<표 3>. 매출액 규모별로는 2005년도에 10억 원 이상 법인이 33.7%로 나타나 나머지 66.3%가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산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규모별로는 적자를 포함해 1억 원 미만인 법인이 86.1%를 차지했다<표 4>.¹

표 3. 법인당 경영 성과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 분	기준 년도	결산법인수		매출액	매출 원가	매 출 총이익	영업 이익	경상 이익	당기순이익	
		계	결손법인						결손포함	결손제외
합 계	2004	2,130	596	1,529	1,325	204	47	44	43	80
	2005	2,180	573	1,709	1,485	223	42	50	48	87
	2006	2,381	626	1,680	1,438	242	45	51	48	89
영농조합 법 인	2004	1,853	491	1,434	1,246	188	43	40	42	74
	2005	1,905	487	1,527	1,329	197	34	41	41	72
	2006	2,058	517	1,512	1,294	219	40	45	45	77
농업회사 법 인	2004	277	105	2,162	1,854	308	70	67	50	128
	2005	275	86	2,971	2,567	403	102	110	102	203
	2006	323	109	2,750	2,356	394	81	86	67	178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¹ 2006년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에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자료를 수록하지 않아 2005년도 자료를 대신하였다. 그런데 2006년도 법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05년보다 약간 적거나 약간 많기 때문에 2006년도 법인규모별 현황은 2005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규모별 법인수

단위: 개소, %

구 분	기준 년도	결 산 법인수	매 출 액				영 업 이 익			
			1억원 미만	1억~ 5억원	5억~ 10억원	10억원 이상	적자	1억원 미만	1억~ 5억원	5억원 이상
합 계	2003	1,914	542	543	269	560	699	1,006	196	13
	2004	2,130	585	620	271	654	742	1,101	239	48
	2005	2,180	560	595	291	734	786	1,091	259	44
	구성비	100.0	25.7	27.3	13.3	33.7	36.1	50.0	11.9	2.0
영농조합 법 인	2003	1,650	440	474	245	491	579	888	173	10
	2004	1,853	485	549	250	569	626	982	209	36
	2005	1,905	471	529	270	635	682	972	221	30
	구성비	100.0	24.7	27.8	14.2	33.3	35.8	51.0	11.6	1.6
농업회사 법 인	2003	264	102	69	24	69	120	118	23	3
	2004	277	100	71	21	85	116	119	30	12
	2005	275	89	66	21	99	104	119	38	14
	구성비	100.0	32.4	24.0	7.6	36.0	37.8	43.3	13.8	5.1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요컨대 출자자개별운영을 제외한 농업법인 중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다운 법인이 44.9%에 불과하고, 이 결산법인 중에서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법인이 33.7%,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 되는 법인이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3. 현행 농업법인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3.1. 농업법인 정책의 추진과정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제 6조에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7조에 위탁영농회사의 육성을 규정하였다. 제도 도입취지는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긴요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업의 육성 등을 통해 영세농어가의 전업(轉業)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농지를 활용하여 영농규모화를 이룩하는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즉 농업법인은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농업법인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 지원내용은 농업법인을 개별 농가와 대등한 지원을 하고 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제도 도입 당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농업경영이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제도화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스스로 농업경영을 담당할 수 없지만 농업경영과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보조적인 농업법인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초기의 영농조합법인은 그 구성원을 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제한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농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크기를 농가 1호당 3ha 이내로 제한하였다. 한마디로 초기에 설계된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규모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1993년의 제도개편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지상한과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상한을 폐지함으로써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표 5. 농업법인의 연도별 설립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계
영농조합법인	1 (0.0)	26 (0.7)	60 (1.7)	230 (6.6)	1,016 (29.1)	1,207 (34.6)	947 (27.2)	3,487 (100.0)
농업회사법인	6 (0.4)	59 (4.2)	166 (11.7)	280 (19.7)	338 (23.8)	326 (23.0)	244 (17.2)	1,419 (100.0)
계	7 (0.1)	85 (1.7)	226 (4.6)	510 (10.4)	1,354 (27.6)	1,533 (31.2)	1,191 (24.3)	4,906 (100.0)

자료: 김정호 외(1997), p. 19.

농업법인정책에 대한 일차적인 변화는 1994년에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나타났다. 여기서는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²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대책으로 1994년부터 농업법인정책이 변경되는 1997년 사이에 많은 농업법인들이 설립되었는데,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 두드러졌다<표 5>.

위탁영농회사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개편은 1994년 12월에 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변

² 개별 경영체인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제도화인데, 이것의 문제점은 후술하기로 한다.

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을 기존의 위탁영농회사의 목적에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은 영농조합법인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농업법인의 두 가지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만 다를 뿐,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는 동일하게 되었다.

지원중심의 농업법인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은 199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기존의 지원정책이 부실한 농업법인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1997년 1월부터 부실 농업법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준을 출자액 1억 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 실적 평가 등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요건과 사업별 지원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공통지원요건은 ①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②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기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④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⑤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법인, ⑥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부적격 구성원 유무 또는 개인사업을 위한 위장설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할 것 등이었다. 사업별 지원요건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 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말한다. 또한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으로 사업규모 5억 원 이상인 경우 재무제표를 징구하고, 사업규모 1억 원 이상인 경우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 진단 평가와 신용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제상으로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업법인이 이 법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7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로 이관되었다.

3.2. 농업법인제도의 골격

농업법인은 제도적으로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즉 농업법인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조건 이외에 농업법인의 설립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6.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발기인수와 출자자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유한책임) 주식회사: 3인 이상(유한책임)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 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3/4 이하
의결권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 또는 1주당 1표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판매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가능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 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가입 가능 생산자단체	농협, 산림조합, 영연초생산협동조합	농협, 산림조합, 영연초생산협동조합

농업법인의 설치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농업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는 유형에 따라 각각 「민법」과 「상법」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을 모태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중 한 가지 형태를 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점은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이 협

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하고 농업회사법인이 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지향한 것에 유래한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 수가 조합원 5인 이상이고,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사는 발기인 2~50인과 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는 발기인 3인 이상으로 설립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농업회사법인 구성원의 책임은 「상법」상의 회사유형별 책임과 동일하다.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인 1표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 1구좌당 1표(합명·합자·유한회사), 주식 1주당 1표(주식회사)이다.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업무집행권 소유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등을 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으로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종류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3.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농업법인제도에 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적용받는 협업체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규정을 받는 기업체로 설계되었지만,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에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상 두 조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복합사업이 농업법인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산물유통·가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이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한다 하더라도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농업법인정책은 1994~1996년에 대대적인 설립 지원을 통해 부실 농업법인이 양산되자 1997년 이후 정책사업의 자격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업법인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법인이 유통분야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에 서게 된다. 농업법인이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이 유통 및 가공관련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한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이것은 또한 개별 경영체인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한 잘못된 제도에 그 책임이 있다.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만든 이 규정 때문에 농업법인이 농협과 같은 다른 생산자단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관이 없다. 현재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농업법인들의 협회조차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농업법인의 운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4. 외국의 농업법인제도와 시사점

4.1. 독일의 농업법인 관련 제도

독일에서는 농업법인경영체를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농업경영체가 「상법」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혹은 「협동조합법」상의 등록조합으

로 등록하면 농업법인경영체가 된다. 이처럼 농업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가 동반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법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영체의 유한책임 여부이다. 경영체의 책임이 유한할 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한책임을 갖는 경영체는 비록 「상법」상의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되지 못한다. 독일에서는 무한책임을 갖는 민법상의 회사(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등을 인적회사로 분류해 법인과 구별하고 있다.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영농활동 희망자와 농업 종사자들이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영농활동 희망자는 자신의 영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영농조직 형태를 찾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형태가 메뉴로 기능하게 된다.

인적회사를 포함한 독일의 협업 및 법인조직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등록조합 형태의 농업경영체, 즉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다. 영농조합이 현재 동독지역 농경지의 절반 이상을 경작할 정도로 중요한 법인조직일 뿐 아니라, 이 법인경영체가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7.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 천 개소, %, ha

구분	1999				2005			
	경영체 수(비율)	경지비율	평균경지면적	경영체 수(비율)	경지비율	평균경지면적		
개인경영체(농가)	450.4	(95.4)	69.9	26.6	371.4	(93.9)	68.9	31.6
인적회사	16.1	(3.4)	12.0	127.7	18.8	(4.7)	13.5	122.6
-민법상 회사	13.7	(2.9)	9.5	118.8	15.5	(3.9)	10.9	120.1
-합명회사	0.1	(0.0)	0.0	34.6	0.1	(0.0)	0.0	77.9
-합자회사	0.9	(0.2)	2.4	430.3	1.2	(0.3)	2.4	333.9
-기타 회사	1.3	(0.3)	0.1	14.9	2.0	(0.5)	0.2	13.6
사법상의 법인	4.5	(1.0)	17.8	676.9	4.6	(1.2)	17.3	647.5
-등록조합	1.4	(0.3)	10.0	1,251.6	1.2	(0.3)	8.9	1,289.8
-유한회사	2.4	(0.5)	7.1	506.7	2.6	(0.7)	7.6	488.8
-주식회사	0.1	(0.0)	0.6	874.3	0.1	(0.0)	0.6	968.3
-기타 법인	-	-	-	-	0.6	(0.2)	0.2	51.6
공법상의 법인	0.9	(0.2)	0.3	64.8	0.7	(0.2)	0.3	76.6
합계	472.0	(100)	100.0	36.3	395.5	(100)	100.0	43.1

자료: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각연도

영농조합의 법적 형태, 즉 등록조합은 모든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농업경영체 뿐 아니라 일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조합 등도 모두 등록조합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조합은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즉 농업생산조합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협동조합체계에서 영농조합은 7인 이상의 영농희망자들이 농업경영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심사협회에 가입하면, 라이파이젠협회의 농업생산조합이 된다. 영농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하나의 협동조합협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협동조합협회는 소속된 회원조합이 ① 조합원의 이해에 부합되게 설립되었는지, ②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③ 경영 상태는 정상인지를 심사한다. 또한 협동조합협회는 회원조합의 경영 및 조세문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상담을 한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독일의 제도 가운데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관련된 농업활동 개념을 통해 또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에서 조세상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에 속해야 한다. 이는 모든 농업경영체의 활동이 전부 조세우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상의 농림업은 개념적으로 “산업활동(gewerbliche Tätigkeit)”과 구별되는데, 농업경영체의 생산활동 중에도 “농림업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산업활동”이 있다. 농업경영체의 활동 중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 법인경영체의 생산활동, ② 특별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활동이다. 즉 조세상의 농림업은 일차적으로 작물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의 활동이 되고, 축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된다.

- 처음 20ha까지는 ha당 10 축산단위(VE) 준수
- 다음 10ha까지는 ha당 7 축산단위(VE) 준수
- 다음 20ha까지는 ha당 6 축산단위(VE) 준수
- 다음 50ha까지는 ha당 3 축산단위(VE) 준수
- 더 이상의 사육지에는 ha당 1.5 축산단위(VE) 준수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농림업 생산활동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도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³

³ 조세상 농림업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농업경영체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경우,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② 농산물의 가공 수준이 제1단계 가공(예를 들어, 밀가루 혹은 버터)에 머물 때는 농림업으로 인정하나, 제2단계 가공(예를 들어, 빵 혹은 소세지)은 산업활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제공되는 제2단계의 가공 매출액이 연간 10,3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 과세상의 우대가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① 산업세(Gewerbesteuer) 면제, ② 구입 및 판매 부가가치세율(9%) 정산에 의한 면세, ③ 근로소득세 정산시 낮은 세율 적용, ④ 소득세의 특별공제 적용 등이 있다.

4.2.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민사회사법」상의 회사법인이다. 농업경영체가 「상업회사법」상의 회사로 설립되면 일반 회사와 같은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농업법인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법인으로 설립된 농업경영체를 의미하고, 농업법인제도는 이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회사법」을 통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으로는 공동농업경영그룹(Groupement d'exploitations agricoles en commun, GAEC)과 유한책임농업경영체(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ARL)가 있다.

여기서 GAEC은 가족농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법인으로서 고용노동력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을 제한하고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공동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GAEC에 지분을 출자한 각 구성원들은 농업경영주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GAEC의 경영과 경영성과에 관여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출자지분의 두 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프랑스에서 GAEC의 구성원은 개인경영체의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경우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③ 개설한 유통업 매출이 생산한 농산물의 총 매출액의 40% 이하일 때,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④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금액이 경영체 총 매출의 30% 이하일 때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⑤ 농기계수탁을 통해 얻은 수입이 경영체 총 매출의 1/3을 초과하지 않고 금액으로도 51,500유로를 넘지 않을 때, 이것 또한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 ⑥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산업활동 부분이 발생하면, 전체 활동이 산업활동으로 간주되고 그 수입도 산업활동수입으로 처리된다.

표 8. GAEC과 EARL의 제도적 특성 비교

구 분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회사자본	· 최소 1,500 유로	· 최소 7,500 유로
구성원	· 최소2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인 · 농업경영인 · 배우자만으로 구성 불가	· 최소 1인, 최대 10인 · 비법인, 성인 · 비농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전체 출자금의 50% 이하 한도 내 가능 · 배우자간 구성도 가능
책임한도	· 출자자본의 두 배 한도내	· 출자자본 이내
승인절차	· 있음	· 없음
상한면적	· 없음. 단, 공동경작지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 안됨	· 10 SMI (최소영농정착면적)
법적투명성	· 구성원은 농업경영주 자격 보유 · 정책자금 지원시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수혜받음	· 없음
비고	· 1962년 농업기본법에 근거 · 참여농민은 GAEC의 경영과 농작업에 동시에 참여해야 함. · 부자간에 구성된 GAEC은 경영체 상속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음. · 법인은 참여 불가. · 대부분 한 가족 간의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구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198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됨. · 최소한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은 농업경영인이어야 함. · 부자간 이루어진 GAEC에서 부모의 은퇴 이후 GAEC의 후속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1인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함.

자료: AGREST Cahiers No.41, 1999.

EARL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에 도입되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는 GAEC이 축소돼 1인 참여자로 구성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EARL의 기본성격은 민사회사법상의 회사와 동일한데,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보유지분에 비례한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지분 한도 내로 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법인제도는 한마디로 대규모 기업농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가족농을 법 인화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농업경영체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경우,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 외국제도의 시사점

먼저 독일의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 조직이다. 기업농적 혹은 협업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규모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의 농업법인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인데, 이 조합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서 라이파이젠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이 안고 있는 제도적 그리고 관리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독일의 영농조합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무한책임 문제와 관리감독기구의 부재로 인한 운영상의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독일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독일이 농업경영체 및 농업활동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의미한다. 즉 농업생산 활동이 농업경영체의 지표가 된다. 여기서 개념상 관건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 활동의 비중이다. 농업경영체 개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Förderrecht) 상의 농업경영체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조세법 상의 농림업 개념이다.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지표는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총매출의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세상의 농림업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인을 제외한 농업경영체의 농림업 생산활동이 되지만,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영농 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가 주어진다.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농업활동에 대한 기준 제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특히 농업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유형을 농업생산 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분류할 때 이러한 정의와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 된다.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가족농을 법인화하여 농업경영체의 조직과 구조를 개편했다는 사실과 가족농 법인의 제도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가족농 법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공동농업경영그룹(GAEC)과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인데, 이들 조직의 장단점 비교에서 제도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5. 농업법인의 제도적 발전방향

5.1. 농업법인 발전의 기본방향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농업생산법인을 농업법인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당초 농업법인의 도입취지가 기존의 가족농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창설에 있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농업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경영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제도를 농업생산경영체 중심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제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농업법인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필요하다. 농업법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과 동일한 농업생산자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등을 담당하는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자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인의 경영과 출자에서 농업인 제한규정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농업법인의 제도 개편에서 농업생산법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 하나는 농업법인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적, 협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농가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법인제도는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영체를 유한책임의 법인경영체로 제도화하여 부채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요컨대 농업생산법인 발전의 기본 방향은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한편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여기서 농업서비스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현재 농업법인에게 복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기능 중에서 농업생산 기능에 대해 제

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일반 서비스회사와 같이 자본투자와 설립이 자유롭게 된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 농업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농업생산 기능과 결부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비농업인에게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5.2. 농업법인 제도 개편방안

(1) 농업경영체 개념 정립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는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정의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농업법인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농업경영체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정의는 농업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농업생산활동의 비중이 농업서비스 활동을 포함한 경영체 전체활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농업활동의 크기로 농업경영체를 인정하는 기준은 유럽국가들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적어도 농업생산활동의 비중이 경영체 총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유통활동을 통한 매출이 경영체 총매출의 40% 이내이어야 전체를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활동과 결부된 농업경영체 개념을 정립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시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농업생산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2) 농업법인 유형 구분

농업법인의 유형 구분에서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가 가능한 농업경영체가 된다. 반면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 농업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으로서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자유롭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업관련 회사가 된다.

농업생산법인은 다시 기업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지향하는 법인과 가족농적 소규모 경영체를 지향하는 농업법인으로 세분된다. 이것의 구체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과

“유한영농법인”으로 제도화되는데, 여기서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개편하는 것이고, “유한영농법인”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농업서비스법인 유형에 속하는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고, 새로운 제도적 틀에 부합되게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영역과 비농업인 제한 규정, 농지소유 규정 등을 변경한다. 다시 말해 농업서비스법인은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지만, 비농업부문의 법인에 대한 투자와 경영은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표 9. 새로운 농업법인제도(안)

일반/특수법인	법인의 유형	제도적 형태	특성
농업법인 (특수법인)	농업생산법인	영농조합법인	기업농적 대규모 생산법인
		유한영농법인	가족농적 소규모 생산법인
	농업서비스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의 유통·가공법인

(3) 가칭 “유한영농법인” 제도 도입

가칭 “유한영농법인”의 제도적 시안은 다음과 같다. “유한영농법인”은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농업인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상한을 최대 10인으로 한다. 출자한 자본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로서 회사의 출자자본금을 최소 1,000만원으로 한다. “유한영농법인”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차할 수 있다. 여기서 농업생산법인은 전술한 ‘엄밀한 의미의 농업경영체’ 개념에 속하는데, 농업생산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활동의 비중이 적어도 경영체 총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유한영농법인”을 구성하여 부모가 출자액을 법인에 속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승계를 용이하도록 한다. 단 상속의 특혜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영농법인”으로 농장을 상속한 자는 적어도 10년 동안 농장 전체 혹은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며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자(父子) 간의 “유한영농법인”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자식이 단독으로 법인을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2인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경영체로서 영농부기의 기장과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상법상의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4) 기존의 농업법인 개편

가. 영농조합법인 제도 개편

영농조합법인의 개편은 이 법인을 농업생산법인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농업생산법인은 엄밀한 의미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생산이 주된 경영활동이 되고, 유통 및 가공 활동은 생산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이 주된 사업이 되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을 기업적 농업경영체의 전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내적 조직구조를 단일한 경영체 구조로 변모시키고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즉 영농조합법인의 활동과 별도로 조합원의 개별 생산이 이루어지는 법인의 내적 구조에 변화를 유발하고 법인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이 조합원의 농지를 임차하게 하고, 이를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프랑스의 농업법인(GAEC) 경우처럼 지원금액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조합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무한책임 문제를 갖는 현행 「민법」상의 조합 대신에 독일의 경우처럼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생산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

나. 농업회사법인 제도 개편

농업회사법인 개편의 핵심은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생산이 없는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하고,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을 새로운 제도들에 입각한 법인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면 농업생산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이나 “유한영농법인”으로 변경한다. 만약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면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다. 농업서비스법인으로 특화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내에서의 농업생산활동은 구성원들의 개별 생산으로 환원하든지 “유한영농법인” 등의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표 10. 새로운 제도에 의한 농업법인의 개편 유형

기존 법인 형태	조건	개편 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활동 중심	· 영농조합법인 혹은 “유한영농조합”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없음	· 농업회사법인
	· 농업서비스 중심 · 농업생산 병행	· 농업회사법인 · 농업생산법인(유한영농조합)을 자회사로 설립 · 농업회사법인 · 구성원의 개별 생산으로 전환

(5)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 육성

농업생산과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은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생산과 서비스 영역 간의 수직통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업법인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활동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화에 의한 수직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농업법인 내에서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면, 두 유형의 법인 간의 수직통합 필요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 간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⁴

(6)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농업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의 경영상태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법인운동을 상담·지도하고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밟게 하는 관리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법인의 관리기구가 없어서 개별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는 일차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도·상담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도록 한다. 여기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의무와 함께 관리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다시 말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관내 농업법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활동 중인

⁴ 농업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해서는 단독법인에 비해 설립요건을 간편하게 하고, 정책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에서 계열회사(자회사 혹은 모회사)를 가진 농업법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법인 중 정책자금의 우선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법인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게 하는 권한을 준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구와 별도로 법인의 경영실태를 심사·평가하고 경영문제에 대해 상담·지도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한다. 이러한 전문기구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농업법인협회 산하 전문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농업법인을 대표하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차적으로 이러한 심사 및 상담업무를 농협중앙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별도의 전문기구가 설치되도록 한다. 여기서 심사 및 상담전문기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한다.

6. 맺음말

우리나라에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목적은 협업적 농업경영 혹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대규모 농업생산경영체를 창설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를 평가해 볼 때, 당초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 농업법인제도의 도입이 영농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른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농정기획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대규모 경영체가 많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농가들이 개별 경영을 하면서 인센티브 등으로 부차로 법인경영에 참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업생산법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농업법인들에게 농업생산 자체는 주로 농가들의 개별 경영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농업법인들이 농업생산보다 유통 및 가공 등의 농업서비스 활동에 치중하게 되었다. 여기에도 농업법인이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 모두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순수한 농업생산법인은 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농업생산법인을 농업법인의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농업법인제도를 농업생산경영체 중심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제도적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농업법인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필요하다.

농업법인의 제도 개편에서 농업생산법인의 발전방향은 한편으로는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가족농 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유한영농법인”)를 창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인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전문법인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농업법인 제도의 개편을 통해 법인유형별로 차별적인 농업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농업법인의 운영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족농의 법인화를 통해 현행 농가중심의 경영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참고 문헌

- 김수석, 박석두. 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522.
- 김정호, 김홍배. 1990.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212.
- 김정호, 박문호. 1994.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육성 방안: 농업법인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01.
- 김정호 등. 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24.
- 김정호 등. 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2004-7.
- 박문호, 전익수. 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 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탁보고서 C2000-44.
- 박성호. 1999.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수지 분석과 경영모형 설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광호. 1998. “축산영농조합법인의 발전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한국축산경영학회.
- 통계청. 각연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 Agrést primeur. 2005.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n*.
- AGREST Cahiers. 1999. *Les sociétés agricoles, une affaire de famille*, 1999 No. 41.
- aid. 2003. *Rechtsformen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 Bonn.
-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VEL). 2006. *Agrarpolitischer Bericht 2006 der Bundesregierung*, Bonn.
- Deutscher Genossenschafts- und Raiffeisenverband. 1998. *Gründungshilfe. Was ist eine Genossenschaft?* DGRV Schriftenreihe Bd. 30, Bonn.

원고 접수일: 2007년 5월 28일 원고 심사일: 2007년 6월 11일 심사 완료일: 2007년 9월 20일
--